

조 례 및 일반의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준]

목 차

1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1
2	거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3	서북부경남거점APC 민간위탁 동의안	21
4	거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4
5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6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7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8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1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10. 1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4. 10. 14.

2.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출연개요
 - 1) 근거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2) 대 상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사장 구인모)
 - 3) 사 업 비 : 22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25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출연금	180	260	240	240	220

※ 2024년 출연금 240백만원(2024년 대비 20백만원 감액)

4) 사업내용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비 지원

나. 예산지원 사유

- 1) 거창화강석 연구센터는 기업애로사항 지원, 거창화강석 기술개발 지원, 석재원산지 검증 등을 통해 지역 화강석 산업 발전에 기여
- 2) 거창 석재산업 발전의 중추 기능을 맡고 있는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원활한 거창석재산업 지원과 연구활동을 위한 운영비 지원

다. 2025년 화강석 연구센터 주요사업

- 1)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운영
- 2) 기업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 활용
- 3) 거창화강석 석재산업 육성 사업 추진

4. 참고사항

가.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나. 출연 기관현황 : 붙임 1

다. 관계법령 : 붙임 2

5. 검토의견

- 본 출연안은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 화강석 연구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석재관련 기업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 석재관련 대외업무 지원 및 네트워크 활동, 공공·민간부문 연구용역 수행, 거창화강석 품질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거창화강석 홍보·마케팅 업무 지원 등 지역 화강석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됨.

붙임1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현황**

I **연구센터 일반현황**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연구센터 현황**

- 법 인 명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사장 : 거창군수)
- 법인허가(설립등기) : 2007. 1. 31.(자본금 : 10백만원(거창군 출연))
- 임원현황 : 이사장 외 12명 (이사 10, 감사 2, 간사 1)
- 직원현황 : 총 7명(센터장 1, 연구직 3, 생산직 3)

성 명	직 책	담 당 업 무	학위/자격
최태환	연구센터장	연구센터 업무 총괄 / 기업지원 / 협력네트워크	학사/가'
정영일	책임연구원	시험기관 총괄 / 법인 운영 / 사업 관리 / 기술개발	석사/가'
이승안	연 구 원	시험기관 품질 및 기술업무 지원 / 채석기술 지원	학사/다'
문아인	연 구 원	품질시험실무 / 교육콘텐츠 개발	학사/마'
이진호	생산팀장	기능석재 공장운영 책임, 품질시험실무 등	학사/다'
변태식	사원	품질시험실무 및 보유 장비운영 등	학사/마'
박지훈	사원	품질시험실무 및 보유 장비운영 등	고졸/마'

II

연구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성과

□ 2024년도 성과목표 및 실적

구 분		'24년도 성과 목표	'24도 실적 (9월 23일 기준)
기업지원 (석산/가공)	기업애로사항 지원	20건	15건
	원산지 검증 지원	2건	-
	시험분석 지원	600건	520건
	채석/사면 평가 지원	1건	1건
	석재 대외업무 지원	20건	9건
	홍보 마케팅 지원	10건	2건
학술연구용역	24 석재 품질 분석 외	3건	3건
연구개발	기술개발 및 제품화	2건	2건
경영수익	공인시험기관 운영	180,000천원	103,884천원
	채석/사면 평가 지원	15,000천원	15,000천원
	학술연구/기타 수익금	85,000천원	50,000천원
	합 계	280,000천원	168,884천원

□ 주요업무 추진실적

○ 석재관련 기업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

- ▶ 석재가공부산물 재활용 방안 및 유해성 분석 지원
- ▶ 라돈, 방사능 등 유해성 분석을 통한 거창화강석 품질우수성 확보
- ▶ 홍보물 편집 및 제작 요청에 따른 제작 지원 등



○ 석재관련 대외업무 지원 및 네트워크 활동

- ▶ 골재자원조사 착수보고회 및 중간점검 워크숍 참가
- ▶ 석재 품질분석 전문가 간담회 참석
- ▶ 신성범 국회의원 후보자와의 석분처리를 위한 간담회 참석
- ▶ 신재화 군의원과의 석분처리를 위한 간담회 참석
- ▶ 불합리한 환경분야 규제개선 서부권역 토론회 참석
- ▶ 김홍섭 군의원과의 석분처리를 위한 간담회 참석



○ 공공·민간부문 연구용역 수행

- ▶ 한국임업진흥원 “2024 석재 품질 분석” 용역 수행
- ▶ 국토교통부 “2024 골재자원조사/골재 불소 발생평가” 용역 수행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24 석재자원조사 ” 용역 수행 등
- ▶ 2024 토석채취허가지 항공촬영 및 지적 분석



○ 거창화강석 품질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 ▶ 거창화강석, 조달물품 및 수입석 대상 석재 유해성(라돈) 분석
- ▶ 거창화강석, 조달물품 및 수입석 대상 석재 유해성(석면) 분석
- ▶ 거창화강석, 조달물품 및 수입석 관리를 위한 대자율 측정



○ 거창화강석 홍보/마케팅 업무 지원

- ▶ 거창화강석 조형물 제작 관련 자문 및 홍보
- ▶ 거창화강석 품질 관련 자문 및 홍보
- ▶ 조달물자 전문검사 기관 홍보

□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성과

○ 조경석 단체표준 규격 제정을 통한 거창기업 매출액 증대

- ▶ 2012년 조경석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용역 수주 및 단체표준 제정
- ▶ 2013년 조경석 조달다수공급자(MAS) 물품 등록

<거창 관내 기업 조경석 매출액>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거창 업체수 (개)	3	5	7	8	9	11	10	9	11	11	9
매출액 (억)	37	25	92	86	87	94	88	109	139	101	135

○ 석재 원산지 검증활동 지원 효과

- ▶ 국내 유일의 석재 원산지 검증기관 → 거창화강석 사용 유도
- ▶ 원산지 검증에 따른 효과 : 거창화강석 보호 및 업체 매출 증대
- ▶ 23년 울산지역 관급 물량에 대한 관내업체 계약이 약 86% 정도 체결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9	2020	2021	2022	2023
울산관급물량	1,819	2,958	2,482	1,854	2,000	1,497
울산 "ㄷ"석재	1,114	-	-	-	-	-
거창 관내업체	520	1,813	1,918	1,371	1,402	1,291
타 지역 업체	202	1,145	564	483	598	206
거창업체 점유율	28.6%	61.3%	77.3%	74.0%	70.1%	86.2%

○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운영

- ▶ 2013년 석재 관련 5개 시험항목 인정
- ▶ 2020년 골재 관련 8개 시험항목 인정
- ▶ 조달청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지정(2013년) 및 운영 (단위 : 억원/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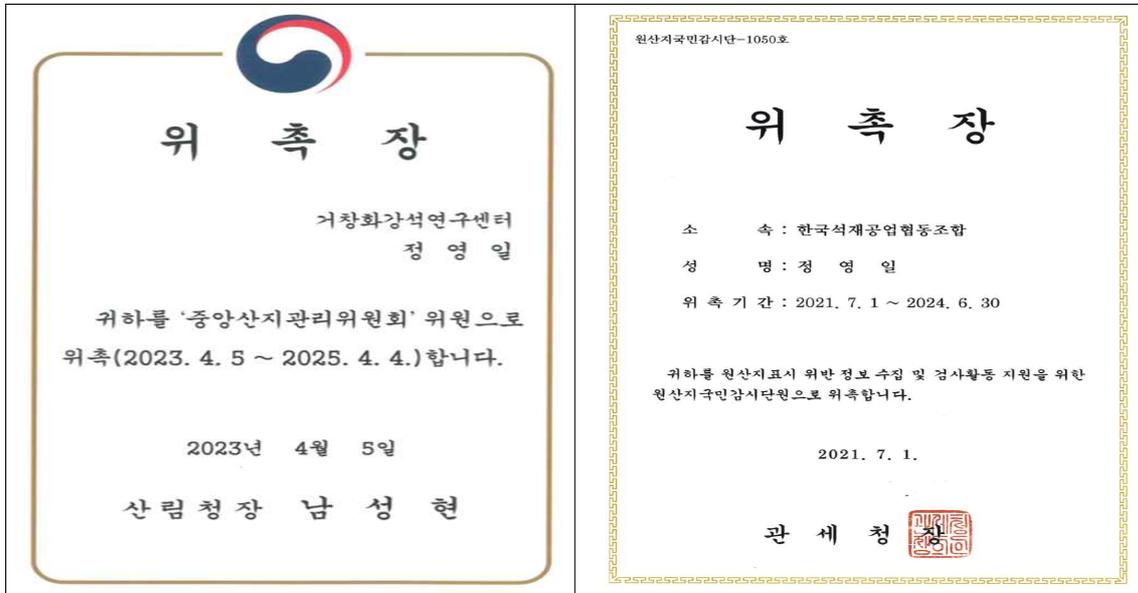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매출액	2.1	1.9	2.2	1.8	1.8
건수	359	605	584	595	623

○ 연구개발 성과

- ▶ 거창화강석 및 조달물품대상 석재 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암대자율 측정
- ▶ 거창화강석 및 조달물품대상 석재 유해성(라돈, 석면) 분석

○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연구센터 및 거창화강석 인지도 증대

-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산림청) : 정영일 책임연구원
2023. 4. 5 ~ 2025. 4. 4 (2년)
- ▶ 원산지 국민감시단원 위촉(관세청) : 정영일 책임연구원
2021. 7. 1 ~ 2024. 6. 30 (3년)



□ 석분슬러지 처리 및 폐석 재활용 지원

○ 석분슬러지 유해성 분석 지원

- ▶ 석재 가공시 발생하는 석분슬러지의 처리 및 재활용 방안을 모색
- ▶ 석분슬러지 관련 각종 시험, 분석업무 등 기업지원 및 애로사항해결
- ▶ 석분슬러지 유해성 분석 ⇒ 관내 업체 유해성 분석지원

○ 폐석 처리 및 재활용 지원

- ▶ 폐석을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등록 유도하여 새로운 재화가치 창출
- ▶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합 단체표준 제품인 잡석으로 종목 추가 등록 (전 가공업체 등록 권장)
- ▶ 유상처리 되던 잡석의 판매 매출 발생 : 200,000원/대(25톤 덤프)

□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 활용

연구개발 추진내용	실적 및 성과	기업체 공동개발 및 기술지원	연구센터 수익사업 기업체공동기술개발
석재품질 평가	석재원산지 검증/판별방법	석재원산지검증 조달청원산지검증	원산지검증수수료
	국제공인시험 기관인정	거창업체(50%할인) 시험분석지원	거창지역/전국 시험분석 수수료
	단체표준 시험기관지정	전국석재관련업체 시험분석 지원	가공조경석형상평가 기술개발용역수행 (특허1건등록/2건출원)
급경사지 안정성평가 기술개발	급경사지안정성 평가분석	사면안정성평가/보강 (3개업체 지원)	거창 및 타 지역 사면안정성평가
	사면안정성평가 시스템 구축	석산인허가관련지원 석산 환경재해평가 및 사면분석 지원	드론을 이용한 사면 평가/지형변화 특허1건 출원
석분슬러지 광물자원화	석분슬러지 유해성 분석	폐기물유해성평가 업무지원(22개업체)	재활용관련기술 (세라믹기술연구원)
	석분재활용 가능성 평가	폐기물 투수/다짐 시험분석지원 폐기물관련법 개정(석산복구사용)	석분활용방안 (도시건축과 연계, 특허 1건 출원)
문화관광 콘텐츠개발	디자인/실용화 제품	석재활용제품개발 (기업체 공동개발)	기업체 공동기술 개발 컬링스톤 상용화
	CNC 장비활용 개발	CNC 장비 활용 가공제품제작지원	
석재표면 처리기술 개발	컬러석재 제조방법	컬러석재 시제품	기업체 공동기술 개발 (특허 3건 출원) 한영대리석 사고석 모동석재 표면처리 (혼드, 브러쉬 등)
	석재표면 처리방법	샘플제작/납품 석재표면처리기술 (기업체공동개발)	

Ⅲ

연구센터 향후 추진사업

□ 기업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 활용

- 신규 아이템 발굴 및 기업 정부지원사업 추진 지원
- 석분슬러지 처리 및 재활용 지원
- 안전한 채석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 지원

□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조달물자전문검사기관 운영

- 국제규격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운영을 통한 신뢰성 있는 시험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외인지도 확대 및 수익 창출
- 현재 석재 분야 5개 규격, 골재 분야 8개 규격을 인정받아 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콘트리트 분야 등 시험범위 확대 추진
-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운영을 통한 석재전문기관 전문성 확립과 인지도 제고 및 수익 창출

□ 거창화강석 석재산업 육성 사업 추진

-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
 - ▶ 거창화강석과 연계한 지질과학 체험공간 조성 및 진로체험 활성화
 - ▶ 유치원생, 초등학생에게 새로운 체험형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에게는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
- 석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개발
 - ▶ 거창군 산림휴양관광 100만 시대 도약 관광 다변화 사업에 맞추어 가형석산 및 폐석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활성화 필요성 대두
 - ▶ 자원의 관광다변화 사업으로 연계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자원의 가치관 확립

□ 기대효과

- 지역에서 차지하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중요성 인식 제고
- 석재산업을 선도하는 거창군 위상 및 거창화강석 산업 부흥 기대

【 출연기관 현황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설립근거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			전화번호 : 055-943-3924			
	규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홈페이지 : granite.re.kr			
주요연혁	법인설립허가 : '07. 1. 31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4. 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7명		7명	0명			
임원 ('24. 9.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거창군청(거창군수)	당연직			
	상임이사	최○○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	"			
	비상임이사	조○○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장	"			
		이○○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장	"			
		한○○	거창석재조합(주) 대표	"			
		이○○	거창석산협회장	"			
		김○○	거창군청(경제기업과장)	"			
		주○○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수	'22. 3. 21. ~ '25. 3. 20.			
		김○○	한국승강기대학 교수	'22. 3. 21. ~ '25. 3. 20.			
	감사	임○○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22. 3. 21. ~ '25. 3. 20.			
		신○○	거창군청(산림과장)	당연직			
변○○	변범식변호사사무소 대표	'22. 3. 21. ~ '25. 3. 20.					
주요기능	거창화강석 1, 2차산업 관련 기업지원, 연구 및 개발, 품질유지 및 관리, 공인시험 서비스 등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4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재무현황 (백만원) '23.12.31기준	자산	537 (자산 총액)
	예산액 ²⁾	922	972	1,016		부채	2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³⁾	260	240	240		자본 ¹⁾	535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3.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26			263		-47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 2006.12.12 조례 제182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 2조 (법인격 및 명칭)

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8. 1. 14)

제 3조 (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 4조 (운영 등)

- 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14)
-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조 (임원)

-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6조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7조 (재산조성 및 운영경비)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 8조 (수익사업)

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 9조 (출연금 등의 지원)

-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 11조 (업무의 위탁)

-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 12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4. 10. 14.

나. 발 의 자 : 이흥희 의원 대표발의

(이흥희,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4. 10. 14.

2. 제안이유

○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산물 및 종자를 보존·육성함으로써 거창군의 전통 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결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제15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농업기술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0. 07. ~ 10.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우리 군에서 자라는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을 통해 토종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군 풍토에 맞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 도내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에서는 토종 농작물 보존을 위해 조례 제정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경상남도

에서는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을 17개 토종농산물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조례제정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경상남도의 사업과 연계하고 우리 군 기후와 유통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경쟁력 있는 군의 토종농산물 지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종재배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항,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방안 마련은 물론, 브랜드 관리, 토종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제반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규칙 제정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에 보다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 현재 거창군은 토종씨앗 육성 지원사업으로 거창군여성농민회를 통하여 1,500만원의 예산으로 토종씨앗 채종포 운영 및 증식농가 육성, 모종나눔 행사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군 토종농산물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명자원”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2. “농업생물자원”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3. “농업생물다양성”이란 다음 각 목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가. 육상생태계와 이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생물체의 다양성

나. 삭제

4. “유전물질”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기원(起源) 물질을 말한다.

5. “농업유전자원”이란 농업생물자원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이 중에서 종자·영양체(營養體)·화분(花粉)·세포주·유전자·잠종(蠶種)·종축(種畜)·난자(卵子)·수정란(受精卵)·포자(孢子)·정액(精液)·세균(細菌)·진균(眞菌) 및 바이러스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야생종: 산·들 또는 강(하천·댐·호소·저수지를 포함한다)이나 바다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

나. 재래종: 한 지역 및 수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재배·사육·양식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된 종

다. 육성종: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종

라. 도입종: 우리나라의 야생종, 재래종 및 육성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종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종

6. “현지내보존”이란 농업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육성종은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지외보존”이란 농업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8.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잠재성을 유지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과 정도로 생물다양성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삭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호 ~제11호 생략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 계획 및 시군구 계획, 그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

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제2항~제8항 생략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제2항~제11항 생략

『서북부경남거점APC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10. 1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4. 10. 14.

2. 제안이유

- 서북부경남거점APC의 민간위탁 운영 관련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 기간 연장을 함으로써 서북부경남거점APC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 설 명 : 서북부경남거점APC
-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
- 다. 시설규모 : 부지 36,376㎡ / 시설 연면적 12,603㎡
- 라. 주요시설 : 선별장 5,850㎡, 저온저장고 3,577㎡, 기타 3,176㎡
- 마. 위탁기간 : `24. 11. 1. ~ `28. 6. 30. (3년 8개월간)

※ 직전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간)

※ 후지수매를 위해 일정을 최대한 당겨서 추진

바. 위탁사무 :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통합 운영, 시설물 관리)

사. 공모 및 평가

1) 모집방법 : 전국 공개모집(군 홈페이지 공고 / 8일)

2) 평가방법 : 서면평가(90점) + 발표평가(10점) ± 가점(5점)
및 감점(20점)

- 서면평가 : 정량평가(50점) + 정성평가(40점)

- 발표평가 : 정성평가(10점)

※ 정량평가 : 담당자 및 담당주사 확인 / 정성평가 : 위원회 심의

3) 평가주체 : 서북부경남거점APC 운영위원회(위원 중 응모업체
주주 배제)

아. 선정방법

1) 심사사항 :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2) 수탁자 선정 : 심사사항 득점의 종합점수 순위로 결정(70점 이상)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참조

나. 관련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5조, 제36조

-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5조, 제17조
- 4)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7조, 제15조, 제17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북부경남거점 APC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 위탁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8개월간으로 지난 281회 임시회 시 현 수탁자인 조공 재 계약 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조공에서 2024년 후지사과 수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후지 수매를 위해 일정을 당겨 전국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코자 하는 것임.
- 새로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시 현수탁자인 조공에 협약 해지 공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수탁자의 협약 위반에 따른 조치로 법령이나 관련 조례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2024년 3월 ‘거창사과 유통시장 개혁을 위한 군민대토론회’ 개최 시 서북부경남거점 APC 운영에 있어 공선참여 농가 확대, 마케팅 역량제고, 농가 수취가 제고, 선별·정산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APC를 활성화하고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 및 평가와 선정에 철저한 대처가 요구되며 민간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서북부경남 거점APC 민간위탁 운영 공모 추진계획

◆ 서북부경남 거점APC 민간위탁 운영 전국공모 추진계획 입니다.

I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5조, 제36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
-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7조, 제5조, 제17조

II 공모개요

- 위탁대상
 - 시설명 :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APC)
 - 위치 : 거창읍 거함대로 3372
 - 시설규모 : 부지 36,376㎡ / 시설연면적 12,603㎡
 - 주요시설 : 선별장 5,850㎡, 저온저장고 3,577㎡, 기타 3,176㎡
 - 위탁기간 : '24. 11. 1. ~ '28. 6. 30. (3년 8개월간)
 - 위탁사무 :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통합 운영, 시설물 관리)
 - 사용료 예정금액 : 해당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이내
(매년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의결)
- 평가사항 : 서북부경남거점APC 운영 위탁업체 적정성 평가

Ⅲ

세부내용

① 공모 및 평가

- 모집방법 : 전국 공개모집(군 홈페이지 공고 등 / 8일)
- 평가방법 : [서면평가(90점) + 발표평가(10점)] ± 가점(5점) 및 감점(20점)
 - 서면평가 : 정량평가(50점) + 정성평가(40점)
 - 발표평가 : 정성평가(10점)
- ※ 정량평가 : 담당자 및 담당주사 확인 / 정성평가 : 위원회 심의
- 평가주체 : 서북부경남거점APC 운영위원회(※ 위원 중 응모업체 주주 배제)

② 평가지표 및 배점

- 서면 평가(90점)
 - 업체현황 평가(정량평가)(50점) : 담당자 및 담당주사 확인
 - 사업수행 계획(정성평가)(40점) : 위원회 심사
- 발표 평가(10점)
 - 발표능력, 추진의지(정성평가) : 위원회 심사
- 가점 및 감점
 - 가점(5점) : 지역사회공헌(4점), 수상 실적(1점)
 - 감점(20점) : 위수탁 계약 위반사항

③ 선정방법

- 심사사항 :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 서북부경남거점APC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
 - '위탁업체 선정 평가지표 및 배점'과 관련한 세부평가 기준항목에 점수를 부여하고 항목별로 합산
 - 서북부경남거점APC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신청업체를 심사 평가하여

수탁자 선정 후 협약 체결

○ 배점기준 : 100점 만점 ± 가점 및 감점(5점 ~ △20점)

- 서면평가 : 정량평가(50점) + 정성평가(40점)

- 발표평가 : 정성평가(10점)

※ 정량평가 : 담당자 및 담당주사 확인 / 정성평가 : 위원회 심의

○ 수탁자선정 : 심사사항 득점의 종합점수 순위로 결정(70점 이상)

※ 동점자 발생 시 사업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운영능력 점수가 높은 자, 재무구조 점수가 높은 자의 순에 따라 선정

IV

세부추진계획

○ 신청업체 준비사항

- 평가지표에 따라 일반현황, 사업실적 등 기초자료 및 평가지표 실적 파악 및 평가 증빙자료 제출

○ 추진일정

- '24. 10. 8. ~ 10. 16.(8일간) : 위탁업체 모집 공고

- '24. 10. 17. ~ 10. 18.(2일간) : 신청서 접수

- '24. 10. 24.(수) : 서북부경남거점APC 운영위원회 개최(예정)

⇒ 위탁 신청업체 정성평가 및 PPT 발표심사

⇒ 거점APC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 '24. 11. 상순 : 선정된 수탁자 협약 체결

- '24. 11. 상순 : 새로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시 조공에 협약 해지 공문 발송 예정(연말까지 조건부 승인 : 후지사과 수매 및 인수인계 철저 등 안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2022. 11. 15.>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전문개정 2009. 4. 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내용·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

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9. 6. 25.>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2019. 6. 25.>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제42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8.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제39조제4항에 따른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2.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채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 및 제88조제6항에 따른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포함한다)

15. 제9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16.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17.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18.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1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20.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2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타조례개정 2021.9.29.)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선별·포장·저장·판매
2. 농산물의 세척·절단·살균·포장 등 신선편이 상품의 생산 및 판매
3.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4. 농산물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5.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유통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1.12.29.)

1. 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할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2021.12.29.)
2. 유통센터 위탁 이용료에 관한 사항
3. 유통센터의 위탁 관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수탁자 선정)

군수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농산물의 수집·판매능력,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경영계획, 인력확보 및 농산물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항삭제및개정 2021.12.29.)

거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4. 10. 14.

나. 발 의 자 :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

(표주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4. 10. 14.

2. 제안이유

○ 도시민의 농촌체험·휴양수요 충족 및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복지·지역경제 활성화
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군수와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6조, 7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행복농촌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9. 27. ~ 10. 4. (8일간)

나) 예고결과: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거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지원과 포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거창군 간의 교류촉진과 공생 발전에 필요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제3조에서 거창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여 농촌체험마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5조에서 우수마을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현재 거창군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4개소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로 꼽히는 마을들을 보면 그곳만의 특별한 정체성과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마을주민들의 협력과 화합이 있었으며 마을 발전과 주민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조례가 제정되면 정책의 수립과 지원에 있어 주민소득 증대방안과 전문인력 육성, 주민역량강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주민갈등 해결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농교류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임.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는 농촌마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의 추가확보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 련 법 령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5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7., 2011. 3. 29.>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같은 항 각 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2. 6. 1.>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대표자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27., 2011. 3. 29., 2013. 3. 23.>
- ④ 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을 그 마을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신청 및 지정·변경지정의 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27., 2011. 3. 29., 2013. 3. 23.>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자원의 개발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제7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①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는 그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1.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
2.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준수

③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제2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운영되거나 그 밖의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아니하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10. 1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4. 10. 14.

2. 제안이유

- 군수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의무화함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군의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정함(안 제45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건축법」 제87조의2
-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3
- 3)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 4)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83호)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대상 지자체 지정

나. 예산조치: 2026년 예산 100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8. 19~9. 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 지자체가 기존 시·도 및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자체에 더해 건축허가면적 또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상위 30% 이내(노후건축물 비율 27.8% 이상)인 인구 50만 명 미만의 구·군이 추가되고

※ 거창군 노후건축물 비율(53.50%)

- 거창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의무화함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군의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 화재 등 기준 기술적 검토를 위한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각 1명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되나,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인력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조례가 개정되면, 건축물 인허가권을 쥔 거창군의 부실 공사 감시·감독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필수전문인력 배치

나. 관련 조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안 제45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6)	2차연도 (2027)	3차연도 (2028)	4차연도 (2029)	5차연도 (2030)	합계
군비	100	100	100	100	100	100

3. 관련 의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해진 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배치하고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1) 필수전문인력: 임기제(나, 다 등급) 2명

작성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0. 4. 7., 2020. 12. 22., 2022. 6. 10.>

1.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3. 삭제 <2019. 4. 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1. 시·도

2.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구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축허가 면적(직전 5년 동안의 연평균 건축허가 면적을 말한다)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군·구

③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10.>

[본조신설 2017. 4. 18.]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6. 26.]

[종전 제119조의3은 제119조의4로 이동 <2018. 6. 26.>]

□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 [국토교통부령 제1344호, 2024. 7. 1., 일부개정]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 구청장이 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지역건축안전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2. 25., 2021. 6. 25.>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기계설비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토질·지질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하 “필수전문인력”이라 한다)은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6. 9.>

1. 제4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

2.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규모·예산·인력 및 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수를 고려하여 단독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5년마다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3. 6. 9.>

⑧ 법 제8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23. 6. 9.>

1. 건축허가 면적: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부

터 과거 5년 동안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신축만 해당한다)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5로 나눈 면적

2. 노후건축물 비율: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의 전체 건축물 중 법 제22조에 따라 최초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3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6. 9.>

[본조신설 2018. 6. 15.]

[종전 제43조의2는 제43조의3으로 이동 <2018.6.15.>]

□ 국토교통부 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83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7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대상 지자체 지정

1. 목적

- 건축행정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 제87조의2 및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지정·고시하고자 함

2. 설치대상

- 총 140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123)
 - * (기준) ①광역지자체, ②인구 50만 이상 시·군·구, ③최근 5년간 평균 건축허가 연면적 또는 ④ 직전 연도말 기준 노후건축물 비율이 상위 30% 이내인 시·군·구
- 상세내역

광역	구분		계
	광역	기초	
17		123	140
서울특별시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2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15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8
인천광역시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6
광주광역시	남구, 광산구		3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5
울산광역시	중구		2
세종특별자치시			1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2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		5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	5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부안군	5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0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13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양산시,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거창군, 합천군	11
제주특별자치도		1

3. 지정기간

-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5년마다 재지정)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10. 1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4. 10. 14.

2. 제안이유

- 가정용 상수도 급수공사비 분할납부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추가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수도 급수공사비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함(안 제13조)
 - 1) 현행: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2) 추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수도법」 제38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범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8. 30~9. 1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을 현행화하고 행정안전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제6조의 2의 시설분담금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현재 시설분담금은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 『거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1조에서 시설의 공사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임.
- 제13조5항에 가정용 상수도 급수공사비 분할납부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추가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개정 권고사항에 의한 것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부분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련 법령

□ 「수도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36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도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도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 「의료급여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35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12.] [시행일: 2025. 7. 19.] 제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646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내야 할 요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요금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10. 1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4. 10. 14.

2. 제안이유

- 전지훈련 선수단의 숙박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지훈련 선수단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거창군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전지훈련 선수단의 지원사항을 구체화함(안 제11조제3호)
 - 1) 숙박, 훈련에 드는 필수경비
 - 2) 군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20,000천원 확보 예정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9. 12.~10. 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전지훈련 선수단의 숙박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전지훈련 선수단을 적극 유치코자 하는 것으로

○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는 선수단이 숙박업소와 식당 등을 이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전지훈련 선수단의 유치 지원

나. 관련 조문: 재정지원(안 제11조제3호)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나.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비용: 2025년 군비 20,000천원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10. 1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4. 10. 14.

2. 제안이유

-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직영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친환경대중골프장 경영의 합리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사업시설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나. 특별회계, 이익의 처리, 업무 상황의 공표를 정함(안 제4조~제6조)

다. 골프장 이용료 등, 이용의 취소·제한, 위탁관리를 정함
(안 제7조~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공기업법」 제5조
-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3,073,266천원 확보 예정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9. 19.~10. 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8조제6호)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직영기업의 설치·운영에 있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안 제2조)

나. 비용발생 요인: 친환경대중골프장 사업 경영을 위해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 연도 (2025년)	2차 연도 (2026년)	3차 연도 (2027년)	4차 연도 (2028년)	5차 연도 (2029년)	합계	
총 비용(a - b)	-	93,927	106,157	6,012	- 1,005	205,091	
세출	인건비	1,100,744	1,119,457	1,138,487	1,157,842	1,177,525	5,694,055
	공공운영비	108,700	108,700	108,700	108,700	108,700	543,500
	관리용역 등	346,852	346,852	346,852	346,852	346,852	1,734,260
	수리수선 등	92,200	192,200	192,200	92,200	92,200	661,000
	지급수수료 등	138,232	138,232	138,232	138,232	138,232	691,160
	행정운영경비	66,538	66,800	67,000	67,500	67,800	335,638
	투자비상환금	1,22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6,020,000
소계(a)	3,073,266	3,172,241	3,191,471	3,111,326	3,131,309	15,679,613	
세입	임대료수익	14,190	14,190	14,190	14,190	14,190	70,950
	입장료수익	2,455,074	2,460,000	2,465,000	2,478,000	2,495,000	12,353,074
	대여료수익	600,878	601,000	603,000	610,000	620,000	3,034,878
	관리비수익	3,124	3,124	3,124	3,124	3,124	15,620
	소계(b)	3,073,266	3,078,314	3,085,314	3,105,314	3,132,314	15,474,522

▶ 투자비상환금(6년 균분상환)이 전액 상환 완료되는 2031년 이후에는 당기순이익이 현재 수준인 12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추계의 전제 및 근거

1) 공무원근로자 18명, 기간제근로자 14명/ 2024년 최저임금 인상분 1.7 퍼센트 가정, 인건비 매년 증액 추계

2) 투자비상환금: 6년 균분상환

가) 2024년 기준 상환잔액(예상액): 7,266백만원

(1) 금액확정: 2024년 공인회계보고서(2025. 2.) 기준으로 변동 가능

(2) 손실보전(개보수) 충당금은 투자비로 상환

2. 2025년 예산: 3,073,266 (단위: 천원)

- 가. 인건비: 1,100,744
 - 1) 공무원: 756,117
 - 2) 기간제: 344,627
- 나. 연금부담금: 63,000
- 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 8,132
- 라. 행사운영비: 24,000
- 마. 재료비 및 소모품비: 133,200
- 바. 수리수선 및 자산취득: 92,200
- 사. 임차료: 51,200
- 아. 관리용역 및 지급수수료: 119,000
- 자.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108,700
- 차. 보험료 및 분담금: 46,232
- 카.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66,538
- 타. 투자비상환금(1회차): 1,220,000
- 파. 홍보비 등 기타: 40,320

3. 참고 자료

- 가.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2023년 운영현황에 대한 특정목적 감사보고서 (한울회계법인)
- 나. 에콜리안 거창골프장 추산부, 예산집행계획
- 다. 2023년 공무원 임금협약서(2023.11.24.)
- 라. 2024년 의령군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세출예산사업명세서(특별회계)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관련 법령

□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법」 등의 적용)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제7조(관리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

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질이 같거나 유사한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자를 1명만 둘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를 1명만 두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37조(이익의 처리) ①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補填)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減債)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源泉別)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제43조(위임규정)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직영기업의 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①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두 번 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각 지방직영기업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지방직영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직영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이 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와 제4항에 따른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거짓 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5조(회계관계공무원)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의 총괄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업출납원과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제3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 기업출납원이 담당하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분장하는 수입원·지출원·자산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현금취급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2. 요금 기타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를 결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3. 계약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②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거나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출납원·수입원 및 지출원의 사무를 대리 또는 분장하게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회계운영에 관한 규칙) 이 장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계약사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그린: 『체육』 골프에서, 홀 주변에 만든, 퍼트를 하기 위한 잔디밭